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
		배포일시	2018. 12. 8(토) / 총 4매(본문 2매)	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고용석, 사무관 장은석, 사무관 허원석, 주무관 곽태훈</li> <li>• ☎ (044) 201-3573, 4529, 3574, 3582</li> </ul>	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##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

### - 발주청 안전관리업무 강화,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(감리자)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 -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「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」의 일환으로 수립된 「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(1.23)」, 「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(7.12)」의 후속조치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·이행 제도 도입
    -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(책임감리, 시공감리, 직접감독 등) 및 감리·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
      -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 이행한 발주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- 또한,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.

## ②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

-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\*하고,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하였다.

\* (현행)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→ (추가) 안전·환경관리 부실로 피해 우려

## ③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

-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.

## ④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

-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·승인시기를 “착공 전”으로 명확히 하고,  
-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,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(중대 건설사고 → 모든 건설사고)

- 중대건설사고\*만 발주청(민간의 경우 인.허가기관)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하였다.

\* 명 이상 사망 , 명 이상 부상 구 . . . . 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, 본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”이라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장은석 사무관(☎ 044-201-45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·이행 제도 도입**

-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(책임감리, 시공감리, 직접감독 등) 및 감리·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이행한 발주청 과태료 부과
- 또한,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**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음**

**②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**

-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 요건을 확대,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

**③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**

-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

**④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**

-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제출·승인시기를 명확히 하고,
  -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,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

**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**

-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(민간의 경우 인·허가기관)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

**⑥ 실정보고 절차 마련**

- 건설업자가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 실정보고하는 절차를 마련
  - 특별한 이유 없이 실정보고 요청을 거부한 감리자와 실정보고 접수를 기피한 발주청에 대해서는 처벌토록 규정

**⑦ 건설 중 사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처벌 근거 마련**

- 벌칙 적용기간을 현행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
**⑧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마련**

- 일정 요건\*을 갖춘 건설업자가 발주청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신기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“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및 기준” 등을 구체화

\* 신기술 관련 건설업등록자, 장비 보유(임대), 신기술 관련 기술 이전

**⑨ 건설현장 부실점검제도 실효성 제고**

- 현장점검 시 점검 근거규정 부족으로 공사현장 점검에 애로가 있으므로, 점검목적을 명확히 규정(부실 방지, 품질 및 안전 확보 등)

**⑩ 설계의 안전성 검토(Design for Safety, Dfs) 의무화**

-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,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

**⑪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의 법률근거 마련**

- 현재 국토부 고시에 규정된 경영개선 명령을 법률로 상향(법제처 지적)

**⑫ 기타 개정 사항**

- 건설기술자 교육·훈련 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
-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 양도, 합병 신고시 신고수리 절차 명확화
-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수행한 건설기술자 및 용역업자 벌칙 부여
-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행 원칙에 안전성 추가
-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취소기준 구체
-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신설
-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미제출 등에 관한 벌칙 부여
- 부당한 신기술협약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벌칙